

“日 IT직종 취업 청년 30%,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도움 국가기술자격증 안내

韓-日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협정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 일본서 인정 美·싱가포르 호텔 등 취업자 23% 한식·양식조리기능사 자격 보유

정보처리기사,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청년이 해외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13일 안내했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중 일본의 경우 정보기술(IT) 직종으로 취업한 253명 가운데 30.4%(77명)가 정보처리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업종별 해외취업 정보 가이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일 양국은 2001년부터 정보기술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국내에서 취득한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도 일본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 호텔 등 서비스 직종에 취업한 123명 중 22.8%(28명)은 한식·양식 조리기능사와 조주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주기능사는 주류, 음료류 관련 재

료 및 제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칵테일을 조주하고 호텔과 외식업체의 주장관리, 고객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취업을 지

원한 청년은 3727명이다. 이 중 미국에 취업한 청년이 10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586명), 베트남(357명), 중국(211명), 캐나다(138명), 싱가포르(137명) 등의 순이었다. 공단은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공고 및 기업정보 ▲국가별 유망직종 및 비자정보 ▲해외취업 안전정보 가이드북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해외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해외 취업의 목표를 이뤄낸 청년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국내를 넘어 청년 해외 일자리 활성화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계열사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빨라진다

공정위 심의의 심의·의결 기준 늘어나 지원금액 현행 20억에서 50억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또 경미한 수준의 입찰담합 사건이라도 계약금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을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기준이 현행 지원금액 기준 20억원, 지원성 거래규모 기준 200억원에서 각각 2.5배 상향된 50억원, 500억원으로 커진다.

공정거래법은 전원회의의 관장사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그 세부 기준으로 지원금액과 지원성 거래규모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른 관련 사건이 전원회의에 편중되다보니 심의에 시

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기준을 상향해 전원회의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심의에서 신속히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반금액이나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이 나타나 전원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의 경우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담합 사건 중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할 수 있는 기준에 계약금액 규모가 추가된다.

현재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을 고려하면서 담합을 한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이 커서 법 위반의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사업자 규모가 작아 경고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큰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계약금액이 건설입찰의 경우 400억원 미만, 그 밖에 물품 구매나 기술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40억원 미만의 경우만 경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개정된 경고 기준은 사

건절차규칙 개정 이후 중요한 담합행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의견청취절차는 공정위의 주요 사건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로 2017년 4월 도입됐다. 그간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1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공정위 신고서식을 개정해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이 정한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나 ‘작성 예시’를 추가했다.

현재는 일반 국민이 공정위 소관 법령의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별도 양식이 없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정해 신고인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난해 5월 ‘대구·경북 화랑훈련’에 참가한 육군 50사단 칠곡대대 장병들이 경계 작전에 임하고 있다. /뉴스1

자치단체장, 통합방위태세 바로 잡을까

합참, 5개 권역 화랑훈련 실시 자치단체장 군부대 이전 공약 등 예비전력 불안정화에 발목

지방선거 등에서 군부대 이전 공약이 남발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사시 지역안보와 치안유지를 위한 통합방위 본부장으로서는 임무를 수행한다. 예비전력을 비롯해 통합방위 태세 등의 불안정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 잡을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합동참모본부(합참통합방위본부)는 올해 화랑훈련을 13~17일 부산·울산권역부터 시작해, 10월까지 부산·울산·제주·전북·충북 등 5개 권역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를 집중 숙달하게 된다. 군·지자체·경찰·해경·소방 등 국가방위요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기동(FTX)으로 훈련도 실시한다.

보수진영은 통합방위태세의 느슨함

을 진보진영의 책임으로만 돌렸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실시됐던 민·관·군 합동훈련을 2019년 ‘을지대극훈련’으로 신설했지만, 수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수년 간 실시하지 못했다.

국가비상사태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훈련도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전무해지면서, 일선 지역방위 부대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수진영도 통합방위 태세에 발목을 잡기는 마찬가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부산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육군 53사단을 부산동부에서 이전해 참다사이언스 파크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해운대 경찰서장 출신으로 해운대구청장에 당선된 김성수 씨도 국제적인 레저·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지역방위사단의 이전에 가세했다.

화랑훈련은 전·평시 발생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를 11개 권역으로 구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동원로엑스, 계열회사 주식 소유 ‘규정 위반’ 시정명령

공정위, 과징금 부과 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의 50%인 32만9000주를 2021년 2월2일~12월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

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연장승인받았으나 기간 내에 법 위반을 해소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